



심사보고서

의안명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안번호	제12호
심사일자	2026. 9. 2.



위원장 박인섭 (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
------	----

2026년 9월 2일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 8. 14. 이강무 의원
- 나. 회부일자: 2026. 8. 18.
- 다. 상정일자: 2026. 9. 2. 제334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이강무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지방공단의 이사장 및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의 요청·실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임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해당 직위에 대한 검증을 통해 구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인사청문 대상 직위(안 제3조)
-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
- 인사청문 요청 시 첨부자료(안 제5조)

- 회부, 기간 및 질의 등 인사청문 절차(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 검증, 공개 및 답변거부 등(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 준용규정(안 제18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 예산조치: 필요시 조치(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혜진)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2026년 8월 14일 이강무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12호로 접수,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제47조의2가 신설(2023. 3. 21. 일부개정, 2023. 9. 22. 시행)되어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과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근거하여 송파구의회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간 임명권자의 권한에만 의존해 왔던 산하 기관장 임용 과정에서 후보자의 도덕성, 전문성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현행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청문을 의회에 요청하는 경우에만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구청장의 인사청문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의회가 먼저 주도하여 인사청문회를 강제하거나 단독으로 개최하는 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함. 따라서 향후 조례가 시행되는 데에는 집행 기관과 의회 간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인사청문 제도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운영의 묘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인사청문 과정에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해당 업무와 관련된 실질적인 검증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임.

- 이상과 같이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인사청문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입안·발의되었음을 검토 보고드립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채승우 위원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로 인사청문회가 열린 사례가 있는지?
- 인사청문회가 구청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 이강무 의원

-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주택공사 등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자치구 중에서는 관악구, 동대문구, 강동구 등 여러 자치구에서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바 있음.
- 임의규정이고, 구속력이 없으므로 임명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질의】 박순례 위원

- 출자·출연 기관장까지 인사청문을 하는 경우, 인사청문회가 잦아지고,

행정력과 비용 낭비가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답변】 이강무 의원

- 송파구에는 3개의 산하기관이 있으므로, 그렇게 많은 행정력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예산 비용 추계도 1억원 미만이므로 생략하였음.

【질의】 박순옥 위원

- 구청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 이강무 의원

- 인사청문 요청이 없으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없음. 그러나, 구청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하고 싶어도 본 조례안이 없다면 인사청문 위원회의 구성,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이 없어 실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조례안이 먼저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당부말씀】 박인섭 위원장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마련된 인사청문 제도를 송파구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그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의 투명성과 구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판단됨. 이는 의회가 구청장의 임명권을 대신하거나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상 후보자의 전문성, 직무수행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위한 제도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5. 심사결과: 원안가결